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안 별표 1)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 및 추가
- 나.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수수료 징수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나.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다.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	시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나.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라.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2. 농수산 관계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낙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건	9,0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24)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	
25)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	
26)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건	1,000	
27)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1건	1,000	
28)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29)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	
30)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31)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32)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33)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	
34)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	
3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	
36)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1건	1,000	
3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	
38) 양식업 변경신고	1건	1,500	
39)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	
40)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라. 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2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다.	토석, 자갈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라.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마.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사.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아.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자.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차.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카.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500	
타.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파.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거.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너.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더.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전국적통일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1건	2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차.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카.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파.	영화업 신고	1건	20,000	
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너.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더.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1건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 -----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소 관 부 서		징 수 과
입 안 자	과 장	박 래 섭
	담 당	최 상 필
	담 당 자	홍 은 주 (480-6893)